



# (주)한맥기술 어천-공주(4차)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2개지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신 건설본부장(행정관리과장)

제목 건설공사의 하도급변경계약(철근콘크리트공사1) 타절정산 통보에 따른 검토보고  
[어천-공주(4차)]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천 제2025-26호(2025.02.11.)의 관련입니다.
3. 「어천~공주(4차)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시공회사인 태화건설산업(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공사1(비앤지건설)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통보(타절정산)가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서 1부. 끝.

2.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서[태화건설산업(주)] 1부. 끝.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송세화



제출자 2025.02.14.  
송세화

시행 한맥어천제2025-24 (2025. 02. 14.) 접수

우 3253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부탕골길 50 어천~공주등 2개지구 건,  
설사업단

전화번호 041-855-7391 팩스번호 041-855-7392 / swgamri1@hanmail.net / 비공개(6)

# 하도급 (변경)계약 적정성 검토서

## 1. 공사 현황

- 가. 공 사 명 : 어천~공주(4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 나. 도 급 액 : 26,652,900,000원
- 다. 공사기간 : 2020. 12. 23 ~ 2026. 12. 21
- 라. 도 급 자 : 태화건설산업(주)외 2개사

## 2. 하도급 계약 현황

당초/변경

하도급공종	도 급 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변경 계약일	하도급액	
철근콘크리트 공사1	2,678,708천원	비앤지건설(주)	철근콘크리 트 공 사	2022.12.28	2,232,560천원	83.34%
	2025.02.05			840,040천원	83.71%	

○ 하도급 공사기간(당초/변경) : 2022.04.12.~2026.12.21. 2022.04.12.~2025.02.05

## 3.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당 초	변 경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대구수성구2001-10-2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대구수성구2001-10-2	적정(동일)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 평가액 : 3,523,330천원	○ 시공능력 평가액 : 6,378,938천원	적정
하도급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전문건설업 하도)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전문건설업 하도)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 약 일 - 2022.12.28 ○ 계약통보일 - 2023.01.10	○ 계 약 일 - 2025.02.05 ○ 계약통보일 - 2025.02.11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 접 지 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서	○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서	적정
하도급계약 이 행 보 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계약보증서 - 보증서번호 : 제20224200-21004634호	○ 계약보증서 - 보증서번호 : 제20224200-21004634호	적정

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공사예정금액 : 30억원 이상 - 해당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현장대리인 - 성명 : 윤재선 - 생년월일 : 69.03.12 - 등급 : 토목고급 - 경력 : 28.1년	○ 현장대리인 - 공사중단으로 미선임	타절정산		
하도급 계획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 (하도급계획의 제출)	제출	제출	적정		
하도급률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82% 미만 적정성 여부 심사)	도급액	2,678,708 천원	도급액	1,003,548 천원	적정
		하도급액	2,232,560 천원	하도급액	840,040 천원	
		하도급률	83.34%	하도급률	83.71%	
하도급률의 적정 (예정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64% 미만 적정성 여부 심사) ※ 2019.03.26. 개정 전(60% 미만)	예정가격	3,172,697 천원	예정가격	1,186,203 천원	적정
		하도급액	2,232,560 천원	하도급액	840,040 천원	
		하도급률	70.37%	하도급률	70.82%	
공동도급사 동의여부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인 서명확인	공동수급인 서명확인	적정		
하도급계약 통보서류 첨부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2.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2. 공사내역서 첨부 3. 예정공정표 첨부 4.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첨부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2. 공사내역서 첨부 3. 예정공정표 첨부 4.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첨부	적정		
하도급관계의 불공정거래 방지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에 관한 조례 제10조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확인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확인	적정		

#### 4. 검토의견

가. 어천~공주(4차)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에 대한 하도급자 (비엔지건설)의 공사포기로 인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타절정산에 따른 변경 계약임.

나. 하도급 변경 계약 내용을 상기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의거 통지기간, 하도급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와 같이 적정하며, 공사중단 시기(2022년 12월 이후)의 현장대리인 미선임 사항은 하도급 정산변경 계약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025. 0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송세화 (인)





# 태 학 건 설 산 업 주 식 회 사

우:3253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627번지/ 전화(041)855-5685 / 전송(041)855-5686

문서번호 어천 제2025 - 026호  
시행일자 2025년 02월 11일  
수 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 조

구 분	건설사업관리단
확 인	
접수일자	2025. 2 . 11 .
비 고	

제 목 하도급변경계약(철근콘크리트공사1)타절정산 통보서 제출

1. 귀 건설사업관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천~공주(4차)지방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1을 불임과 같이 하도급 변경 계약(타절정산)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철근콘크리트공사1 하도급 변경계약(타절정산) 통보서 --- 1부. 끝.

어천~공주(4차)지방도확포장공사 현장대리인 강 성 모

